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5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 제출 강화(김영진의원안)	3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28.
-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전 심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정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하여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 제출 강화(김영진의원안)

현 행	김영진의원안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제81조의13)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u>제공 가능</u>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u>	○ 과세정보 국회 제출 강화 ☐ (현행과 같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u>제공 의무화</u> - (현행과 같음) - <u>국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u>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나.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 김영진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53)

☐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는 사유를 현행 ‘국정조사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더하여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면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강행 규정화하려는 것임.

□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1996년에 신설¹⁾되었는데, 조항 신설 이후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2007년에 과세정보 보호와 의정활동 수행의 조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의결 시 개별 과세정보 대신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임위원회 의결 시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과세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같은 법 제85조의6제4항을 신설하였음.

또한, 2017년에는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 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같은 법 제81조의13제1항제8호를 신설하였고, 2019년에는 국회기관 등이 조세정책의 평가·연구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되, 국세통계센터²⁾ 내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85조의6제7항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신설하여 기초자료 제공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였음.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회 관

1) 1995년,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BASF, HOECHEST 등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가 국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OECD 가입 심사과정에서 독일, 영국 등의 회원국이 우리 정부의 납세자 비밀보호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2) 현재 국세청(세종), 서울지방국세청 내 2곳이 있음.

런 과세정보 제공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국세기본법」상 국회 관련 과세정보 제공 입법례]

요구 주체	사용목적	제공 자료(신설연도)	근거 조항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세법안 심사, 국정감사,의정활동	과세정보를 분석·가공 한 통계자료(2007.12.31.)	제85조의6 제4항제1호
	요구 목적	개인정보를 가공한 과세 정보(2010.1.1.)	제85조의6 제5항
국회예산정책처장 (의장 허가 필요)	세법안 세수추계, 세입예산안 분석	과세정보를 분석·가공 한 통계자료(2010.1.1.)	제85조의6 제4항제2호
국정조사위원회 의결	국정조사	과세정보(2017.12.19.) * 비공개회의에 제공	제81조의13 제1항제8호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2019.12.31.) ※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국세통계센터) 내 에서 제공 ※ 국회의원은 2021.12.21. 개정시 추가 신설됨.	제85조의6 제7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통제하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성실 납세 여부를 검증하는 등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과세정보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고, 과세정보 제공 없이는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조치가 될 수 있음.

둘째,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이라는 공익적 필요에 의한 과세

정보의 제공은 비밀유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함.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법에 따른 안전심사’라는 목적의 제한, ‘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적 제한, ‘비공개회의에 제공’이라는 대상의 제한을 둠으로써 과세정보의 제공이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셋째, 현행법은 ‘국정조사’에 대하여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중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정조사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덜하다거나 특별하게 달리 취급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없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첫째,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익적 필요와 개인 과세정보 보호의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는 여·야간 이견으로 극한 대립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과세정보가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국정감사와 국회법에 따른 안전
심사’의 경우 국정 전반을 대상³⁾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사
안에 대해 실시하고 목적, 조사범위 등이 특정되는 국정조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161

3)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하고 목적, 조사범위 등이 특정되어(「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조사목적 범위 내 과세정보 요구는 제한된 범위에 국한됨.